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70-1
----------	-------

발의연월일 : 2020. 7. 21.

발 의 자 : 서동학, 박우양, 연철흙,
김기창, 송미애, 전원표,
정상교, 허창원, 이의영,
연종석 의원

1. 수정이유

- 기금 조성 재원과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제5조제1호와 제3호의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을 삭제함(안 제5조)
- 제6조제2항에 기금 사용 사업들에 대한 배분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폐합학교·학교이전배치·통합운영학교와 같은 적정 규모학교육성 학교에 대한 기금 배분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 제16조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함(안 제16조)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교부액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을 “교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매각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기금 배분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 중 제1호에 대한 기금 배분을 우선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운영규정)”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수정안
<p>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u>교부액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u></p> <p>2. (생략)</p> <p>3.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u>교육감이 정하는 금액</u></p> <p>4. (생략)</p>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p> <p>1. ~ 4. (생략)</p> <p>5. <u>그 밖에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u><신설></u></p> <p>제16조(운영규정) <u>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u></p>	<p>제5조(기금의 조성) ----- -----.</p> <p>1. ----- ----- ----- ----- <u>교부액</u></p> <p>2. (현행과 같음)</p> <p>3. ----- <u>매각대금</u></p> <p>4. (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금의 용도) ①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② <u>제1항 각 호에 대한 기금 배분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각 호중 제1호에 대한 기금 배분을 우선으로 한다.</u></p> <p>제16조(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5.] [교육부령 제199호, 2020. 2. 25., 일부개정]

-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① [법 제6조 제2항](#) 및 [영 제4조 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7. 31.>
- ② [영 제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31.>
- [전문개정 2008. 2. 28.]

【조례안 원안】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470
----------	-----

제출연월일 : 2020. 6. 29.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회계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아. 기금의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0. 3. 27. ~ 2020. 4. 16.
 - 2) 규제심사: 해당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규모학교”란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로서의 학교를 말한다.
2. “통폐합”이란 동일학교급간 통학구역 조정을 통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합하여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학교”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폐지된 학교의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
4. “폐지학교”란 제2호에 따라 통폐합되어 없어지는 학교를 말한다.
5. “학교이전재배치”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6. “통합운영학교”란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운영하여 학교규모를 적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7. “관할청”이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각각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교육감은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4.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학교통폐합, 학교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통학지원 등의 사업
2.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
3.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행정과장
3. 기금출납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② 제1항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제6조의 사업계획을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해마다 제1항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통합·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금의 합리적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과장, 정책기획과장, 학교혁신과장, 예산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나. 정부 출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 라.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비의 기금 운용을 통한 체계적 예산 관리
- 개교 시 보통교부금으로 일시에 교부되는 지원금의 연차별 관리 필요

2. 비용 발생 요인

- (세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
- (세출)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에 대한 지원, 농·산촌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등

3. 관련조문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교부액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4.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적정규모학교 육성(학교통폐합, 학교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학교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개선, 학교통학지원 등의 사업
2.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
3.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5. 그 밖에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함)

- (제1호)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교에 대한 지원
 - 지원내용: 통학지원비, 기타교육활동비, 시설비
 - 지원액 계: 76,087,777천원

(단위: 천원)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액	10,129,453	9,441,356	9,525,624	9,309,843	8,475,409
연도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원액	7,832,648	7,035,020	6,971,128	5,958,202	1,409,094

- (제2호)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지원사업
(제3호)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
 - 지원내용: 지역별 자율사업(적정규모학교육성 및 작은학교활성화 정책 사업)
 - 지원액 계: 19,670,000천원

(단위: 교, 천원)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작은학교 수	192	192	191	194	198
지원액	1,920,000	1,920,000	1,910,000	1,940,000	1,980,000
연도별	2026	2027	2028	2029	2030
작은학교 수	200	200	200	200	200
지원액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 (제5호)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내용: 1~3호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비
 - 지원액 계: 4,324,025천원

(단위: 천원)

연도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액	435,000	435,000	435,000	435,000	435,000
연도별	2026	2027	2028	2029	2030
지원액	435,000	435,000	435,000	435,000	409,025

나. 추계 결과: 10년간 100,081,802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 따라 산정되는 학교·학급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보통교부금, 자체수입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행정국 행정과장 이종수